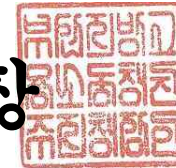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12. 2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노0준	79.05.28.	경남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 일자 및 1,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- 1차 출석통지: 21.10.25 - 2차 출석통지: 21.11.02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 문 부재

4. 공고기간 : 2021. 12. 2. ~ 2021. 12. 1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 거창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왕은영 (Tel. 055-949-65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